

■ 간호법 시행규칙 [별표 1]

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(제4조 관련)

1. 시험과목	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
2. 시험방법	필기시험
3. 합격자 결정방법	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